

1. 개정 이유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함. 또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근거를 신설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23조제4항)

1) (지정가능기관) 인권위원회, 보건복지인재원, 자활복지개발원, 전문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2) (인적 요건)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1인 이상 둘 것

3) (시설 요건)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1개 이상 확보할 것

나.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안 제23조제5항)

1)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인적 및

시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으로 정하도록 함

다.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안 제23조제6항)

1)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계획서 등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라. 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고려 사항(안 제23조제7항)

1) 인권교육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마.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안 제23조제8항)

바. 인권교육기관의 운영실적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규정(안 제23조제9항)

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교육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

2)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교육생·강사의 교육과정 및 출결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23조제10항)

아. 인권교육의 방법 및 경비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제11항)

자. 노숙인 종사자 보수교육에 노숙인복지정책, 노숙인복지실천기술, 노숙인 복지윤리, 인권보호 등을 포함토록 규정(안 제23조의2제1항)

차.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규정(안 제23조의2제2항)

카. 시설장은 종사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안 제23조의2제3항)

타. 보수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23조의2제4항)

1) (지정가능기관) 보건복지인재원, 자활복지개발원, 전문성·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2) (인적 요건) 보수교육 업무 담당자 1인 이상 둘 것

3) (시설 요건)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1개 이상 확보할 것

파. 당연지정 보수교육기관(안 제23조의2제5항)

-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인적 및 시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지정 보수교육기관으로 정하도록 함

하.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안 제23조의2제6항)

- 1)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계획서 등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거. 보수교육기관 지정 시 고려 사항(안 제23조의2제7항)

- 1) 보수교육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을 지정

너.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보수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안 제23조의2제8항)

더. 보수교육기관의 운영실적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규정(안 제23조의2제9항)

- 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교육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
- 2)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교육생·강사의 교육과정 및 출결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러.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23조의2제10항)

머. 보수교육의 방법 및 경비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의2제1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9. ~) 결과,
3) 행정규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인권교육의 실시)”를“(인권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인권교육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10항”으로, “교육 실시 기관·법인·단체의 선정, 교육시기 및 교육방법, 교육경비 지원”을 “인권교육의 방법 및 경비”로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일 것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라.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2. 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1개 이상 확보할 것

⑤ 제4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가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교육운영 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3.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전담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 계획서

4. 교육시설 현황(평면도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의 신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노숙인 복지 등 인권교육의 전문성

3. 기관·법인·단체 운영의 안정성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법인·단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법 제20조제4항제4호의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교육생·강사의 교육과정 및 출결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⑩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복지정책 및 노숙인복지실천기술

2. 노숙인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3. 그 밖에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일 것

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다.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

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2. 보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1개 이상 확보할 것

⑤ 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가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교육운영 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3.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전담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 계획서

4. 교육시설 현황(평면도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의 신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노숙인 복지 등 보수교육의 전문성

3. 기관·법인·단체 운영의 안정성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법인·단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의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교육생·강사의 교육과정 및 출결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⑩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 별지 제23호, 별지 제24호 및 별지 제2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제10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인권교육기관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인권교육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인권교육의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영리를 목적으로 인권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4]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의2제10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보수교육기관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수교육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의 2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보수교육의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영리를 목적으로 보수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의2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20조의2 제3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2 제3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법 제20조의2 제3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교육기관 개요	명칭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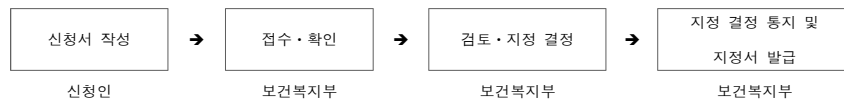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운영 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3.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전담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교육시설 현황(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로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앞 쪽)

제 호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 교육기관명:
- 소재지: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교육기관의 장 성명(법인은 대표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이	이	이
---	---	---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illegible]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교육기관 개요	명칭	
	소재지	

200 200 200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운영 계획서(재정운영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3.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전담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교육시설 현황(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18 -

(앞 쪽)

제 호

보수교육기관 지정서

- 교육기관명:
- 소재지: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교육기관의 장 성명(법인은 대표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합
니다.

이
한
문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직인

(뒤 쪽)

[illegible]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생략) <신설>	제23조(인권교육) <삭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인권교육 시간-----.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법 제20조제3항의 “전문인력과

<신설>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일 것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라.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2. 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1개 이상 확보할 것

⑤ 제4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

<신 설>

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가 인권교육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교육운영 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3.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전담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교육시설 현황(평면도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의 신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신 설>

<신 설>

<신 설>

2. 노숙인 복지 등 인권교육의 전문성

3. 기관·법인·단체 운영의 안정성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인권교육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법인·단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법 제20조제4항제4호의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교육생·강사의 교육과정 및 출결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⑩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실시 기관 · 법인 · 단체의 선정, 교육시기 및 교육방법, 교육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⑪ ----- 제10항-----
----- 인권교육의 방법 및 경비 -----

-----.

제23조의2(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복지정책 및 노숙인복지 실천기술
2. 노숙인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3. 그 밖에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 법인 ·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법인 · 단체일 것
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다.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 ·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2. 보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1개 이상 확보할 것

⑤ 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 법인 · 단체가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교육운영 계획서(재정운용계
획서를 포함한다)
3.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전담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교육시설 현황(평면도를 포함
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의
신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노숙인 복지 등 보수교육의
전문성
3. 기관·법인·단체 운영의
안정성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보수교육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서를 해당 기관·법인·단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의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교육생·강사의 교육과정 및
출결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⑩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
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u>제23조의2</u> (생략)	<u>제23조의3</u> (현행 제23조의2와 같음)
<u>제23조의3</u> (생략)	<u>제23조의4</u> (현행 제23조의3과 같음)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